

수신 국세청장(부가가치세과장)

(경유)

제목 '서울·부산 내·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'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 현황 안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

가.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등

나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산업제도과- 1073호(' 22.5.10.), 366호(' 24.2.6.), 1290호(' 24.5.21.), 2634호(' 24.11.1.), 504호(' 25.2.24.)

3. 아래와 같이 '서울·부산 내·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'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 현황을 알려드리오니,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등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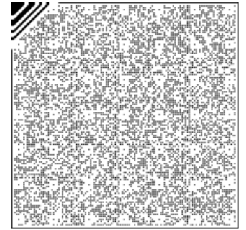
○ 지정 현황

연번	기업명	지정일	유효기간
1	(주)위홈	'19.11.28.	'20.7.15.~'24.7.14. * 법령정비 검토 기간 동안 유효기간 연장
2	(주)미스터맨션	'24.1.23.	'24.10.14.~'26.10.13.
3	(주)싸이트지니	'24.10.17.	사업개시로부터 2년
4	주식회사 스테이폴리오	'25.2.20.	사업개시로부터 2년
5	(주)데이존	'25.3.28.	사업개시로부터 2년

○ 지정 내용

- 특례내용 : 특례기업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도시민박을 중개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
- 실증범위 : 서울·부산지역, 호스트별 영업일수 연간 180일 이내 등
- * 조건 : 불임의 '부가조건'을 충실히 따를 것

불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각 1부. 끝.

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

주무관	나용진	행정사무관	이나은	관광산업정책과 전결 2025. 4. 29.
협조자				장 이영민
시행	관광산업정책과-2408	(2025. 4. 29.)	접수	
우	30119	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	관광산업정책과	/ http://www.mcst.go.kr
전화번호	044-203-2868	팩스번호	044-203-3480	/ onarol10329@korea.kr / 부분공개(5,7)